



산학협력운영위원회 규정

제정일	2013. 8. 1
개정일	2023.10. 1
개정차수	5차
담당부서	산학협력과

제 1조 (명칭) 본 운영위원회는 동서울대학교 산학협력운영위원회(이하 “운영위원회”라 한다)라 칭한다.

제 2조 (목적) 이 규정은 동서울대학교의 산학협력 업무 운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본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며,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3조 (구성) ① 운영위원회 위원은 총장이 위촉하는 약간 명으로 한다.

② 운영위원장은 산학취업처장이 되며, 운영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교직원 및 외부위원을 추천하여 총장이 위촉한다. (개정 2014. 1. 1, 2023.10. 1)

제 4조 (임기)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 5조 (기능)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·결정한다.

1. 연간 산학협력 활동에 대한 결과 평가 및 환류
2. 산학협력 활성화 대책 수립과 관련된 사항
3. 산학협력 운영과 관련된 사항
4. 기타 산학협력과 관련된 제반사항

제 6조 (회의)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하며 위원의 과반수 참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7조 (운영위원회의 사무관장) 운영위원회의 제반 사무는 산학취업처 산학협력과에서 관장한다. (개정 2014. 1. 1, 2014.11. 1, 2018. 4. 1, 2020.11. 1)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